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46
----------	-----

제출년월일 : 1996. 5. .

제출자 : 대전광역시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90. 12. 28 제정 시행중인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법률제4891호 '95. 1. 5)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제13056호 '95. 7. 6) 및 동법시행규칙(통상산업부령제23호 '95. 8. 11) 개정으로 동법시행규칙에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으로써, 동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법률 제4891호 '95. 1. 5)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42조(대통령령 제1305호 '95. 7. 6)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제26조(통상산업부령제23호 '95 8. 11)
- 대전광역시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대전광역시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근 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하지 아니한 정부투자기관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정부투자기관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정부투자기관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정부투자기관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1항·제19조제2항·제25조제1항·제28조제2항·제45조 및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7. 제26조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량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 한 자
 9.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5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11.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3. 제8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②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과태료의 금액 및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 및 부과기준을 별표4와 같다. 이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회수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26조관련)

(단위 : 만원)

구 분	내 용	해 당 법조문	과 태 료			
			1 회 위반	2 회 위반	3 회 위반	4 회 위반
1. 에너지사용 계획협의를	가. 협의요청을 하지 아니 한 정부투자기관	법 제8조 제1항	50	100	200	300
	나. 에너지사용계획의 조 정 또는 보완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이 행하지 아니한 정부투자 기관	법 제9조 제1항	50	100	200	300
	다. 관련자료의 제출요청 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 부한 정부투자기관	법 제9조 제2항	50	100	200	300
	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요청받은 조치의 이행여 부에 대한 조사를 정당 한 이유없이 거부한 정 부투자기관	법 제10조	50	100	200	300
2. 에너지공급 자의 수요관 리 투자계획	가. 수요관리 투자계획 및 시행결과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에너지공급자	법 제12조 제1항	50	100	200	300
3.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업주관자 외의 자의 사용계획신 고	가. 에너지사용계획을 신 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의 신고를 한 자	법 제11조 제1항	50	100	200	300

(추 63)

•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른 등급신고등	나. 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측정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등급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등급표시기자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법 제19조 제 2 항	50	100	200	300	
• 에너지관리 대상자의 지정등	다. 에너지사용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법 제25조 제 1 항	20	50	100	300	
• 에너지관리자의 선임	라. 에너지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법 제28조 제 2 항	30	70	150	300	
• 제조업의 휴·폐지등의 신고	마. 제조업의 휴·폐지·사업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제조업자	법 제45조	20	50	100	300	
•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바.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검사대상기기설치자	법 제59조 제 3 항	30	70	150	300	
4. 에너지사용등의 기록	가.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사용동에 관한 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법 제26조	20	50	100	300	
5. 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등	가. 건축물안의 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	법 제36조 제 1 항	1°C위반	60	120	180	
		2°C위반	70	140	210		
		3°C위반	80	160	240		
		4°C위반	90	180	270		
		5°C위반	100	200	300		

6.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설 치·시공기준 등	가.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기록 및 배관 도면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 제 2 항	30	50	100	300
7. 자체검사등	가. 형식승인을 얻은 열사 용기자재를 제조한 경우 의 자체검사기록 및 검 사대상기기의 운전·보 수등에 관한 자체검사기 록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7조 제 1 항 또 는 제 3 항	20	50	100	300
8. 검사대상기 기 조종자의 의무등	가.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의무적인 준수사항을 준 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 제 1 항	20	50	100	300
	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 서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의 의견등에 대한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 제 2 항				
9.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가.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한 자	법 제67조	300			
	나.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한 자	법 제86조				
10. 교 육	가. 지정에너지관리대상 자·시공업자·검사대상 기기설치자로서 에너지 관리자·시공업의 기술 인력·검사대상기기조종 자로 하여금 통상산업부 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8조 제 2 항	20	50	100	300

※ 주) 이 표에서의 위반횟수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적용하되, 최근 2년간의 위반 횟
수의 누계치로 한다.

(추 63)

제10편 지역경제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1990. 12. 28
조례 제2069호]

개정 1993. 6. 25 조례 제2283호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로 한다.

1. 에너지 관리대상자로서 법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위반자
2. 열사용기자재제조업자 또는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로서 법 제35조(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자체검사 위반자
3.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로서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위반자
4.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로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신설 93. 6. 25 조례 제2283호>
5. 시공업자로서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시공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신설 93. 6. 25 조례 제2283호>
6.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의 작성 및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신설 93. 6. 25 조례 제2283호>
7. 냉·난방온도제한기준 준수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제한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 단, 건물이 전부 또는 구역별로 임대되어 임차인이 해당구역의 건물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경우 임차인으로 한다. <신설 93. 6. 25 조례 제2283호>

제 3 조 (부과기준) ①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신고지연 일수가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별표 금액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고, 신고 지연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의 한도안에서 별표 금액의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

제10편 지역경제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의, 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과태료 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고 1회 위반시에 한하여 경고 처분할 수 있다.

③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회수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93. 6. 25 조례2283호>

제 4 조 (부과징수) ① 관계공무원(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된 업무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사용자등의 위법시설을 조사, 확인하였을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자인서를 징구하여 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 5 조 (통지·납부) ① 광역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금액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부과하고 이를 납부한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받은자는 15일이내에 과태료를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이의신청)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광역시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93. 6. 25 조례 제2283호>

부 칙 (조례 제2069, 2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편 지역경제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별표) <개정 93. 6. 25 조례 제2283호>

과 태 료 부 과 - 기 준

(단위 : 만원)

구 분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과 태 료			
			1 회 위 반	2 회 위 반	3 회 위 반	4 회 위 반
1. 에너지사용자(에너지관리대상자)	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법 제 20조 제1항	20	50	100	300
	나. 에너지관리자의 채용·해임·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법 제 23조 제2항	30	70	150	300
	다. 에너지사용량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 21조	20	50	100	300
2.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및 시공업자	가. 제조업 또는 시공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휴지·폐지·사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법 제 35조 및 제 46조 제 2항	20	50	100	300
	나.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 기록 및 배관도면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 42조 제 2항	20	50	100	300
	다. 형식승인된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 47조 제 1항	20	50	100	300
3. 검사대상기기설치자	가. 검사대상기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 47조 제 3항	20	50	100	300
	나.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법 제 31조 제 1항	30	70	150	300
4. 냉·난방 기준온도위반행위자	가. 기준온도 0.1℃~1℃위반	법 제 31조 제 1항	경고	60	120	180
	나. 기준온도 1.1℃~2℃위반	·	70	140	210	
	다. 기준온도 2.1℃~3℃위반	·	80	160	240	
	라. 기준온도 3.1℃~4℃위반	·	90	180	270	
	마. 기준온도 4.1℃이상	·	100	200	300	

(별지 제2호 서식)

계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구 동 번지					
납					
위반사항					
관	입 시 적	항	잠수입	목	과태료
세	외수입				
납입기한		년 월 일			
금 액		원			
위의 과태료가 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 과되었으니 당시 금고에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계 호	과태료납부서				
구 동 번지					
납					
위반사항					
관	입 시 적	항	잠수입	목	과태료
세	외수입				
납입기한		년 월 일			
금 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①			
(수납기관용)					

계 호	영수필통지서				
구 동 번지					
납					
위반사항					
관	입 시 적	항	잠수입	목	과태료
세	외수입				
납입기한		년 월 일			
금 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금고		①			
귀하					

계 호	영 수 증				
구 동 번지					
납					
위반사항					
관	입 시 적	항	잠수입	목	과태료
세	외수입				
납입기한		년 월 일			
금 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시금고		①			
(납부자용)					

제10편 지역경제 대전광역시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

